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성준 • 박 정 • 허종식

박상혁 • 박홍배 • 박희승

문대림 • 백혜련 • 민병덕

이훈기 · 허 영 · 노종면

김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지급되고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유아 위주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

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10만원을"을 "50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	지급액) ① <u>18세</u>
만의 아동에게 매월 <u>10만원을</u>	50만원을
지급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	<u><삭 제></u>
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7)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u>18</u> A)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②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8세</u>	<u>1</u> 8州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③ • ④ (생 략)

-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③・④ (현행과 같음)
H)	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18</u> 科
	<u>.</u>
	⑥·⑦ (현행과 같음)
()	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선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 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 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 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u>18</u> 科
② ~ ⑤ (현행과 같음)